

의안번호	2207730
의 퇴 인	윤후덕 의원
회 답 일	2025. 2. 19.
추계번호	25E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1,216억원, 2035년 3,880억원 등 10년간 총 2조 1,623억원(연평균 2,1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29조의9)	-1,216	-1,358	-1,386	-1,503	-1,765	-2,312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326	-2,657	-3,219	-3,880	-21,623	-2,16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9 신설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 대상: 2026년 1월 1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근로자 - 감면율: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 <table> <tr> <th>근속연수</th> <th>감면율</th> </tr> <tr>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5%</td> </tr> <tr> <td>10년 이상 15년 미만</td> <td>10%</td> </tr> <tr> <td>15년 이상</td> <td>15%</td> </tr> </table> - 적용기한: 2035년 12월 31일	근속연수	감면율	5년 이상 10년 미만	5%	10년 이상 15년 미만	10%	15년 이상	15%	
근속연수	감면율										
5년 이상 10년 미만	5%										
10년 이상 15년 미만	10%										
15년 이상	15%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9 신설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전제
 - 원천징수를 통해 감면이 반영될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당해에 세수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함
- 중소기업 장기채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의 세수효과는 「취업활동통계등록부」¹⁾ 및 「국세통계연보」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감면 대상자 수) 「취업활동통계등록부」(통계청)를 활용해 근속연수 10년 미만의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수를 파악한 후, 연차별 근속유지 비율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감면 대상자 수를 추정
 - 2026년 1월 1일 기준, 근속연수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2022년 자료를 통해 파악한 수준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 2021~2022년 자료를 통해 산출한 연차별 근속유지 비율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가정
 - (1인당 감면액 추정) 근속연수별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임금 추정치에 소득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평균 세부담을 추정한 후, 감면율을 적용하여 1인당 감면액을 계산
 - (근속연수별 평균임금) 「취업활동통계등록부」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평균 임금(2022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 상승률 및 연차별 임금 격차를 적용하여 연도별·근속기간별 평균임금을 전망
 - (실효세율) 「국세통계연보」(국세청)상 2023년 귀속기준 총급여 구간별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을 계산하며, 향후 실효세율이 유지된다고 가정
 - (근속연수별 감면율) 5~10년 미만: 5%, 10~15년 미만: 10%, 15년 이상: 15%

1) 「취업활동통계등록부」는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 등에서 포착된 개인 일자리에 대한 전수자료로서, 그 중 '고용편'은 인구 관련 항목(성별·거주지 등), 고용 관련 항목(종사상 지위·근무일수 등), 기업 관련 항목(기업규모·종사자규모 등) 등 2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전체 세수효과) 1인당 감면액에 감면 대상자 수를 곱한 후, 총급여구간별로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산출
 - 세부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감면 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므로, 총급여구간별로 결정세액 존재 비율을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감면 대상자 수) 2026년 1월 1일 기준 근속연수별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취업활동통계등록부」(2022년)과 동일하다고 전제하되, 향후 연차별 근속유지 비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동 개정안의 감면대상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10년 미만 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함

[표 2] 2026년 1월 1일 기준 근속연수별 중소기업 근로자 수 (추정치)

(단위: 만명)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근로자 수	199.1	150.0	84.1	64.2	49.1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근로자 수	35.6	27.1	21.6	18.7	14.8

주: 중소기업에서의 근무를 주된 일자리로 응답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파악
 자료: 통계청,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1년~2022년 자료를 통해 산출한 연차별 근속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3] 근속연수별 근속 비율

(단위: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
근속유지 비율	60.7	61.9	69.1	75.2	77.8	...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20년 미만
근속유지 비율	89.9	89.8	89.6	89.6	91.1	92.3

주: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파악
 자료: 통계청,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장기재직 근로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자 수를 다음과 같이 추정함

[표 4] 근속연수별 감면대상자 수

(단위: 만명)

시점 근속연수 (2026년 기준)	2026	2027	2028	...	2032	2033	2034	2035
1년 미만	199.1	120.9	74.8	...	24.1	20.1	17.0	14.6
2년 미만	150.0	91.0	56.4		18.2	15.2	12.8	11.0
3년 미만	84.1	51.0	31.6		10.2	8.5	7.2	6.2
4년 미만	64.2	39.0	24.1		7.8	6.5	5.5	4.7
5년 미만	49.1	29.8	18.5		5.9	5.0	4.2	3.6
6년 미만	35.6	21.6	13.4		4.3	3.6	3.0	2.6
7년 미만	27.1	16.5	10.2		3.3	2.7	2.3	2.0
8년 미만	21.6	13.1	8.1		2.6	2.2	1.9	1.6
9년 미만	18.7	11.4	7.0		2.3	1.9	1.6	1.4
10년 미만	14.8	9.0	5.6		1.8	1.5	1.3	1.1
계	664.5	403.3	249.7	...	80.4	67.1	56.9	48.7

자료: 통계청,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근속연수별 평균임금) 「취업활동통계등록부」상 2022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향후의 근속연수별 평균임금을 전망

-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음

[표 5] 근속연수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2022년 기준

(단위: 만원)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3,456	3,711	3,993	4,157	4,351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4,531	4,762	4,986	5,214	5,404

주: 중소기업에서의 근무를 주된 일자리로 응답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파악
자료: 통계청,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기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명목임금 상승률 및 연차별 임금격차를 반영하여 향후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
 - (명목임금 상승률*) NABO의 '25~'35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3.5~3.7%
 - *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증가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 (연차별 평균임금 격차) 2022년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2.4~7.6% 차이

[표 6] 근속연수별 평균임금

(단위: 만원)

시점 근속연수 (2026년 기준)	2026	2027	2028	...	2032	2033	2034	2035
1년 미만	1년 미만 3,920	2년 미만 4,360	3년 미만 4,860	...	7년 미만 6,681	8년 미만 7,252	9년 미만 7,861	10년 미만 8,447
2년 미만	2년 미만 4,208	3년 미만 4,692	4년 미만 5,059		8년 미만 6,996	9년 미만 7,583	10년 미만 8,148	11년 미만 8,875
3년 미만	3년 미만 4,528	4년 미만 4,884	5년 미만 5,295		9년 미만 7,315	10년 미만 7,860	11년 미만 8,560	12년 미만 9,091
4년 미만	4년 미만 4,714	5년 미만 5,111	6년 미만 5,514		10년 미만 7,582	11년 미만 8,258	12년 미만 8,769	13년 미만 9,425
5년 미만	5년 미만 4,934	6년 미만 5,323	7년 미만 5,795		11년 미만 7,966	12년 미만 8,459	13년 미만 9,091	14년 미만 9,797
6년 미만	6년 미만 5,138	7년 미만 5,595	8년 미만 6,069		12년 미만 8,160	13년 미만 8,770	14년 미만 9,450	15년 미만 10,195
7년 미만	7년 미만 5,400	8년 미만 5,858	9년 미만 6,345		13년 미만 8,460	14년 미만 9,116	15년 미만 9,834	16년 미만 10,556
8년 미만	8년 미만 5,655	9년 미만 6,126	10년 미만 6,577		14년 미만 8,794	15년 미만 9,486	16년 미만 10,182	17년 미만 10,930
9년 미만	9년 미만 5,912	10년 미만 6,349	11년 미만 6,910		15년 미만 9,151	16년 미만 9,822	17년 미만 10,543	18년 미만 11,317
10년 미만	10년 미만 6,129	11년 미만 6,671	12년 미만 7,079		16년 미만 9,475	17년 미만 10,170	18년 미만 10,916	19년 미만 11,718

자료: 통계청,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인당 감면액 추정) 근속연수별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임금 전망치에 소득세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평균 세부담을 추정하고, 근속연수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1인당 감면액을 계산

- (실효세율) 2023년 기준 총급여구간별로 소득세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음
 - －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연말정산 신고자료상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표 7] 총급여구간별 실효세율

	3~4천만원	4~4.5천만원	4.5~5천만원	5~6천만원	6~8천만원	8천만원~1억원
실효세율	1.1%	2.0%	2.7%	3.6%	5.2%	7.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르면 근속연수별로 소득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음
 - － (근속연수별) 5~10년 미만: 5%, 10~15년 미만: 10%, 15년 이상: 15%

[표 8] 근속연수별 감면율

(단위: %)

적용시점 근속연수 (2026년 기준)	2026	2027	2028	...	2032	2033	2034	2035
1년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5	5	5	5
2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5	5	5	10
3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5	5	10	10
4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5		5	10	10	10
5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5	5		10	10	10	10
6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5	5	5		10	10	10	10
7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5	5	5		10	10	10	15
8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5	5	5		10	10	15	15
9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5	5	10		10	15	15	15
10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5	10	10		15	15	15	15

○ 1인당 감면액 = 평균임금([표 6]) × 실효세율([표 7]) × 감면율([표 8])

[표 9] 근속연수별 1인당 감면액

(단위: 만원)

적용시점 근속연수 (2026년 기준)	2026	2027	2028	...	2032	2033	2034	2035
1년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7.4	18.8	20.4	32.0
2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8.2	19.7	30.8	67.2
3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19.0	20.4	64.8	68.8
4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0.1		19.7	62.5	66.4	71.3
5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9.7	10.6		41.4	64.0	68.8	74.2
6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9.4	10.2	15.8		61.8	66.4	71.5	133.2
7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9.8	10.7	16.5		64.0	69.0	74.4	206.8
8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0.3	15.9	17.1		66.6	71.8	199.5	214.2
9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0.8	16.5	35.9		69.3	111.5	206.6	221.7
10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15.9	34.7	36.8		107.6	199.3	213.9	22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전체 세수효과) 1인당 감면액에 연도별 감면 대상자 수를 곱한 후, 총급여 구간별로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산출
- 「국세통계연보」 상 총급여구간별로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대비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10] 전체 신고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비율

	3~4천만원	4~4.5천만원	4.5~5천만원	5~6천만원	6~8천만원	8천만원~1억원
결정세액 존재 비율	72.8%	84.7%	90.6%	95.8%	99.0%	99.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1,216억원, 2035년 3,880억원 등 10년간 총 2조 1,623억원(연평균 2,1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29조의9)	-1,216	-1,358	-1,386	-1,503	-1,765	-2,312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326	-2,657	-3,219	-3,880	-21,623	-2,16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